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24
----------	------

2023년 9월 1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8월 14일, 이영실 의원 외 28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영실 의원]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및 개정된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제명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1) 가로수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함(안 제3조).
- 2) 가로수 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한 조례 제명을 수정함(안 제7조의2).
-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은 생활권 숲의 확보가 미약한 상황에서 도시숲 등(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체계적 조성¹⁾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되었음.

도시숲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던 도시림과 생활림을 비롯해 가로수에 관한 사항이 삭제(타법개정)되고 동 법에 신설(이관)²⁾되었음.

이에 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³⁾하여 이를 반영한 바 있고,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서 단서 조항을 통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가로수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가로수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가로수의 정의와 관련한 사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2)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3) [시행 2022. 7. 1.] [서울특별시조례 제8300호, 2021. 12. 30., 제정]

중 「도로법」 제10조 등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⁴⁾이 있는바, 이를 바로잡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 도시숲법 제2조(정의)에서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⁵⁾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⁶⁾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안 제3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안 제7조의2는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규정하던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관(신설)된 것을 반영해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
- 안 제8조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시행하되,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단서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가로경관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판단됨.

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정의 부분 개정(2009년) 이후, 「도로법」 전부개정 사항 미반영

5)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서울시는 동 조례 16조(점검)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에 의해 가로수를 조치할 때에도 기본계획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가지치기를 시행하도록 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식재된 것”을 “조성·관리하는 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동일한”을 “일정한”으로, “동일 수종”을 “적정 수종”으로, “식재함”을 “심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립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을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호”를 “제1호”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호라목 단서 중 “식재 할”을 “식재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상층이 될”을 “상층될”로, “등”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 안전시설”을 “등의 안전시설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지체 없이”를 “즉시”로,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본문 중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를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수목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하여 심을”을 “정할”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가로수”를 “대상 가로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지치기시”를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월동중”을 “월동 중”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바뀌심기를 요하는”을 “바뀌심기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기에 점검”을 “경우에 실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표1의6”을 “별표 1의6”으로, “위탁 하여야”를 “위탁하여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조성 등” 이”를 “조성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을 “승인을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성 등의”를 “조성 및 관리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관리청간”을 “관리청 간”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가로수관리대장)”을 “(가로수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합리적”을 “체계적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u>다음에</u>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p> <p>가. <u>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u></p> <p>나. <u>특별시도, 구도 등 「도로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로</u></p>	<p>제3조(정의) ----- -----.</p> <p>1. ----- ----- ----- ----- <u>다음 각 목</u> ----- ----- ----- ----- ----- <u>조성·관리하는 수목</u> ----- -----.</p> <p>가. 「<u>도로법</u>」 제10조에 따른 <u>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u></p> <p>나.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조제2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p>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노선
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
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3. (생략)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
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
을 말한다.

5. (생략)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
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생략)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
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
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을 말한다.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

〈삭제〉

2.·3. (현행과 같음)

4. ----- 일정한 -----

적정 수종----- 심는 것
-----.

5. (현행과 같음)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
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8.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
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
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
(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
다.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

행)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2과 같다.

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생략)

2. 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 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

행) ① -----

----- 수립하여야 한다.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 가로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2와 ---.

제6조(식재 위치) -----

----- 범위 -----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

----- 범위 -----

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생략)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 다. (생략)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4. (생략)

제7조의2(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리청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2. (생략)

-----.

3. (현행과 같음)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식재할 -----.

2. -----

----- 범위 -----
-----.

3.·4.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5. (생략)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

상충될 ----- 등
의 -----
-----.

③ ----- 등의 안전
시설물-----
----- 경우에는 ---
----- 즉시 -----
-----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 시기)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수목의 -----

----- 정할 -----.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 대상 가로수-----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 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④·⑤ (생략)

⑥ 시장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 중 서울특별시도에서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지치기) ① -----

② -----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범위 -----

제12조(병해충의 방제) -----

----- 다음 각 호와 -----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월동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
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생략)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
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
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
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라. (생략)

2. ~ 5. (생략)

제16조(점검) ① (생략)

② 점검대상은 바뀌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
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
로 한다.

③ (생략)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
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

-----.

1. ~ 4. (현행과 같음)

5. 월동 중-----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
- 다음 각 호와 -----

-----.

1. -----

-----.
다음 각 목-----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바뀌심기가 필요한 -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 위탁) ① (생략)

② 제13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 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 9제1항 관련 별표1의6의 수목진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

경우에 실시-----.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1의6 -----

----- 위탁하여야 -----.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 조성 및 관리 -----

② -----

----- 그 -----.

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해당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가로수관리대장)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생략)

----- 승인을 받-----
-----.

④ ----- 조성 및 관리의 -----

--.

제22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

----- 관리청 간-----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가로수 관리대장) ① -----
----- 체계적인 -----

-----.

② (현행과 같음)